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PATENT LAW

제5판

호 이 L 자 T O

특허법

서브집 핸드북

변리사 조현중

변리사스쿨

본 교재는 주요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서브집입니다.

본 교재에는 강의에서 사용하는 약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어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는 JHJ-GROUP.com으로
질문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6월 30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본 교재는 아래의 법 및 판례를 기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순번	법령 등	비고
1	특허법	법률 제20700호, 2025.7.22.시행
2	특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08호, 2024.8.7.시행
3	특허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9호, 2024.11.1.시행
4	判例	2025년 6월까지 선고된 중요 판례

PART 01 이론편

1

제1장 절차총칙 2

제2장 거절이유 20

제3장 출원절차 44

제4장 심사, 공개 57

제5장 특허권, 실시권, 질권 63

제6장 침해실체 78

제7장 침해 절차 (심판/특허법원 소송) 88

제8장 조약 105

PART 02 요약편

113

제1장 절차총칙 114

제2장 거절이유 124

제3장 절차 134

제4장 심사관 심사 152

제5장 특허권, 실시권, 질권 156

제6장 배타권 침해실체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293

제07장 특허법배타권 침해절차 - 심판, 소송	171
제08장 PCT / 기타조약	182

PART
01
이론편

- CHAPTER 01 절차총칙
- CHAPTER 02 거절이유
- CHAPTER 03 출원절차
- CHAPTER 04 심사, 공개
- CHAPTER 05 특허권, 실시권, 질권
- CHAPTER 06 침해실체
- CHAPTER 07 침해 절차 (심판/특허법원 소송)
- CHAPTER 08 조약

1. 내용 개괄

당사자 → 대리인 → 서류 → 기간 → 수수료 → 반려/절차무효 → 권리이전시 절차속행/효력승계
→ 절차 취하/포기

2. 당사자 (능력/복수당사자)

가. 능력 (서/권리능력/절차능력)

1) 서

특허에 관한 절차(심사 또는 심판 등)를 밟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특허법상의 절차능력 또는 절차능력 · 권리능력이 필요하다.

절차능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절차 (권리능력이 없어도 밟을 수 있는 절차) (비법인사단 · 재단도 밟을 수 있는 절차)	권리능력 및 절차능력 모두 요구되는 절차 (좌측 경우 제외한 모든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 보정, 분할, 분리, 변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취소신청인 • 각종 무효심판 청구인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무효심판 피청구인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피청구인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 • 거절결정 불복 심판 청구인 • 정정심판 청구인 •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 • 상기 심판의 심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심판의 심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심판의 심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2) 권리능력

(의의) 권리능력이란 특허법에 의해 부여되는 일반적인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 자격을 말한다.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비법인사단 · 재단의 경우) 비법인사단 · 재단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권리능력이 없어도 밟을 수 있는 절차만 밟을 수 있다.

3) 절차능력

(의의) 절차능력이란 당사자로서 스스로 유효하게 특허에 관한 절차상의 행위를 하거나 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 자격을 말한다. 절차능력이 없는 자는 절차능력이 있는 대리인 등에 의해서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흡결사유)

미성년자 등(3) → 법정대리인 뺀(단,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추인 可(소급유효, 7-2)¹⁾

비법인 사단 등(4) → 대표자 또는 관리인 뺀

재외자(5, 206) → 특허관리인 뺀(단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경우, 국내단체진입 절차 제외)

(흡결사유 극복 가능 여부)

미성년자 등이 3조 위반하고 절차 진행 → 46 i 反 → 16(당해 절차 무효 可) → 법정대리인 추가하는 보정(=추인 효과 발생)으로 하자 치유 可
 재외자가 5조 위반하고 절차 진행 → 시규11vi 反 → 시규11④(서류 접수 x, 절차 진행 자체 x)
 → 반려사유이므로 특허관리인 추가하는 보정 不可

나. 복수당사자 (대표자 미선임/대표자 선임/대표자 지정)

1) 대표자 미선임

(각자 대표) 출, 존, 신, 청, 우, 불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즉 각자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이는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

2) 대표자 선임

(대표자 선임)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즉 대표자만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대표자 선임 절차)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 마찬가지로(7)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3) 대표자 지정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국제출원의 경우 출원인들이 대표자를 정하지 않으면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다(197②). 대표자 지정은 내국인 또는 재내자인 외국인에 해당하는 출원인 중 첫번째로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한다(시규106-4).

3. 대리인 (구분/법정대리인/임의대리인)

가. 구분

(의의) 대리인이란 당사자의 이름으로 특허에 관한 제반 절차를 대신 밟는 자를 말한다.

(구분)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미성년자 또는 대리권 없는 대리인이 절차 진행	보정명령(46 i)	보정 x	당해 절차 무효 可	
		보정 o (성인이 됨 / 법정대리인 추가 / 대리인에게 수권)	당해 보정행위를 추인으로 취급	당해 절차 소급 유효(7-2)

대리인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상대방의 특허취소신청, 심판 또는 재심 청구에 대한 수동적 절차에 한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절차 진행 可(3②)]
	임의대리인	재내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6)
		재외자의 위임에 의한 특허관리인(5)

나. 법정대리인

(의의) 법정대리인이란 대리권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인을 말한다. 미성년자 등에게 법정대리인이 존재한다.

(범위) 당사자의 특별 수권 없이 출, 존, 특, 신, 청, 우, 불, 복의 6조 절차 대리도 가능하다(심사기준).

(절차)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7).

(기타) (절차중단사유) 법정대리인 사망 또는 대리권 상실시 절차가 중단된다(20iv). 단 임의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대리권이 소멸되지 않으며(8iv, v)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다. 임의대리인

(의의) 임의대리인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를 말한다.

(범위) 재내자의 임의대리인,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은 특별 수권 없이 출, 존, 특, 신, 청, 우, 불, 복의 6조 절차 대리가 불가능하다(46 i).

(절차)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7).

(기타) (임의대리권 불소멸) 당사자의 사, 능, 합, 수/법정대리인의 사, 능, 소, 변이 있어도 임의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8). (포괄위임제도) 장래 사건에 대해서까지 대리권을 부여하는 포괄위임제도(시규5-2)가 존재한다. (개별대리원칙) 당사자가 2인 이상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어도 대리인은 각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9). (대리인 선임명령 등)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대리인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명령을 한 후 그 전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진행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10).

4. 서류 (작성/제출/송달)

가. 작성 (서/특허고객번호/전자문서)

1) 서

(작성방법)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제출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전자문서의 경우 전자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는 제출인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시규2).

(흡결사유) 성명 또는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는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반려 사유에 해당한다(시규11①iii).

2) 특허고객번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는 사전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고객번호 부여를 신청하고, 주소 대신 부여 받은 특허고객번호를 서류에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사전에 특허고객번호 부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위 내용은 대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28-2).

3) 전자문서

(주의사항) 서류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전자문서는 문서와 효력이 같다(28-3). 다만 문서와 달리 주의사항으로서 전자문서는 특허청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작성하면 반려되며(시규11①xiii), 전자서명 등록을 위해 사전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한다(28-3).

(제한) 비밀취급된 국방관련 출원은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시규9-2③).

나. 제출 (서/우편/정보통신망)

1) 서

(제출방법) 서류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직접, 우편, 정보통신망(전자문서만 가능)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전자문서는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직접,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28-3).

(효력발생시기) 서류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28).

(수신처) 서류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한다(시규3). 심판절차는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처로 하고, 그 외 절차는 특허청장을 수신처로 한다.

2) 우편

(일반적인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등록신청서류, 국제출원서류) 등록신청서류와 국제출원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더라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28②).

3) 정보통신망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28-3).

다. 송달 (서/우편/정보통신망/공시송달)

1) 서

(송달방법) 서류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령18①), 송달불능인 경우에 한해 공시송달이 가능하다(219).

(송달대상) 미성년자등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게 하며(령18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서류 송달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한다(령18⑧).

(효력발생시기) 출원인과 대리인 중 누구에게라도 최초로 송달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判例).

2) 우편

(일반적인 경우) 송달 받은 날 송달효력이 발생한다.

(송달거부) 정당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한 때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령18⑩).

(재외자) 재외자로서 특허관리인이 있으면 특허관리인에게 송달하고, 특허관리인이 없으면 재외자에게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이 경우는 발송일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220).

3) 정보통신망

(대상)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28-5①).

(효력발생시기) 통지등을 받은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28-5).

4) 공시송달

(요건) 서류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다(219①). 공동출원의 경우는 공동출원인 전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공시송달이 가능하며, 공시송달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출원인 중 1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송달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判例).

(절차) 송달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발급한다는 뜻을 특허공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219②).

(효력발생시기) 최초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송달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송달효력이 발생한다(219③).

5. 기간 (서/계산/연장/추후보완/정지)

가. 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않은 서류는 반려된다(시규11①vii).

주요 법정기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무효처분의 취소(16②)

- (1)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절차의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16①).
- (2) 절차가 무효가 무효로 된 경우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해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6②).

2. 절차의 추후보완(17)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기간), 제18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지에의적용(30)

- (1) 자기 의사에 의해 공지 등이 된 경우(30①I)
 - (i)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특허출원서에 공지에의적용의 취지를 기재하고,
 - (ii)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30②). 다만 보완수수료를 납부하면, 제47조 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또는 특허결정 등 본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설정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 공지에의적용의 취지 기재 서면 또는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30③).
- (2) 자기 의사에 반한 공지 등이 된 경우(30①II)
 - (i)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하나, (ii) 증명서류는 차후 심사관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위반되었다고 의견제출기회를 받은 때 제출하면 된다.

4. 무권리자 출원·특허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출원(34, 35)

- (1) 무권리자의 출원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34)

무권리자 출원의 거절결정 또는 기각심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원할 것. 출원서와 함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시규31).
- (2) 무권리자의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35)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원할 것. 출원서와 함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시규31).

5. 분할출원기간(52①)

- (1) 제47조 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 (2) 거절결정등본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또는 연장된 기간 이내)
- (3) 특허결정 등본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설정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

5-2. 분리출원기간(52-2①)

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심결등본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또는 부가기간 이내)

6. 변경출원기간(53①)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또는 연장된 기간)까지 변경출원이 가능하다. “최초”거절결정등본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므로 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여 원거절결정이 취소되었다가 다시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불가하다.

7. 분할 · 변경출원의 조약우선권증명서류 제출(52⑥, 53⑥)

조약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분할 · 변경출원의 경우, 최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분할 ·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참고로 분리출원은 위 +3개월 기간에 관한 규정 없다(52-2②).

7-2. 분할 · 변경출원이 외국어출원인 경우 국어번역문 제출(52⑦, 53⑦)

외국어로 분할 ·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 최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분할 ·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어번역문 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7-3. 분할 · 변경출원의 청구범위 제출(52⑧, 53⑧)

청구범위 기재 없이 분할 ·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 최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분할 ·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8. 조약우선권주장(제54조) 관련 기간

(1) 우선기간(54②)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기간」 내에 출원하여야 하는데, 우선기간은 특허 및 실용신안은 12월, 디자인 및 상표는 6월로 규정하고 있다(파리조약).

(2) 증명서류의 제출(54⑤)

최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54⑦)

최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9. 국내우선권주장(55, 56) 관련 기간

(1) 우선기간(55①)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2) 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55⑦)

최선출원일로부터 1년 4월 이내에 당해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3) 선출원의 취하간주일(56①)

우선권주장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 3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4) 우권권주장의 취하 가능시기(56②)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3월이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10. 심사청구 가능기한(59)

(1) 통상의 출원의 경우(59②)

특허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2) 무권리자의 특허출원·특허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출원(59③)

무권리자의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당권리자의 출원이 무권리자의 출원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지난 후인 경우, 그 정당권리자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 할 수 있다.

(3) 분할·분리·변경출원의 경우(59③)

원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분할, 분리 또는 변경출원일이 원출원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경우에는 분할, 분리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 가능하다.

(4) 조약 또는 국내우선권주장출원(54, 55)

우선권주장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11. 출원공개(64①)

(1) 일반적인 경우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지난 후 출원공개된다. (i)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출원의 경우 무권리자 출원일, (ii) 분할 또는 변경출원의 경우 원출원일, (iii) 조약 또는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 최우선일로부터 1년 6월을 기산한다.

(2) 분할, 분리 또는 변경출원의 경우

분할, 분리 또는 변경출원일이 원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을 지난 후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바로 출원이 공개된다(심사기준).

12. 재심사청구 가능기간(67-2①)

특허결정 등본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설정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 거절결정등본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3. 특허출원의 회복(제67-3①)

특허출원인이 정당한 사유로 재심사 또는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되거나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 또는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출원이 취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7조의3).

14. 특허료의 납부(79, 81)

(1) 납부기간(79①)

특허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월 이내에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고(특허료등의징수규칙 제8조), 다음 연도분부터는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선납하여야 한다.

(2) 추가납부기간(81①)

특허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PART
02
요약편

- CHAPTER 01 절차총칙
- CHAPTER 02 거절이유
- CHAPTER 03 절차
- CHAPTER 04 심사관 심사
- CHAPTER 05 특허권, 실시권, 질권
- CHAPTER 06 배타권 침해실체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 CHAPTER 07 특허법배타권 침해절차
 - 심판, 소송
- CHAPTER 08 PCT / 기타조약

1. 개요

주요내용요약			
특허에 관한 절차 총칙(심사, 심판 절차 등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규정)			
방식	서면(서류)반려사유 / 절차무효사유 관련		
	절차를 밟는 자에게 요구되는 능력	당사자능력(제4조) / 권리능력 / 절차능력(제3조, 제4조, 제5조)	
	절차를 밟는 자의 절차능력을 보조해주는 자(대리인)	법정대리인	친권자 / 후견인 대리권(제3조 제2항) 비교
		임의대리인	특별수권(제6조) / 서면증명(제7조) / 대리권불소멸(제8조) / 포괄위임(시행규칙 제5조의2) / 개별대리(제9조) / 대리인 선임·개임 명령(제10조) / 복수당사자(제11조) ²⁸⁵⁾
	수수료	납부할 자(제82조) / 감면·면제사유(제83조) / 반환(제84조)	
	서면	서면작성 / 서면제출 / 서면송달	
	기간	기간계산 / 기간변경 / 절차추후보완 / 기간정지	
절차취하·포기	취하시기제한 / 취하불가 / 취하간주 / 포기간주 / 청구항별 포기		
절차효력승계/속행	특허권·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시 효력승계·절차속행(제18조, 제19조)		

285) 법리가 임의대리인과 유사하여 임의대리인 쟁점에서 함께 다룬다.

2. 본인 능력

주요내용요약			
권리능력	비법인 사단 등 권리능력 없는 자도 밟을 수 있는 절차 존재		
절차능력	미성년자 등	법정대리인 필요	서류 보정명령 (추인 가능)
	비법인 사단 등	대표자 또는 관리인 필요	서류 보정명령
	재외자	특허관리인 필요	서류 반려
		국내단계진입 특례 (기준일부터 2개월)	취하간주 (제206조 제3항)

절차능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절차 (권리능력이 없어도 밟을 수 있는 절차)	권리능력 및 절차능력 모두 요구되는 절차 (좌측 경우 제외한 모든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 보정, 분할, 분리, 변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취소신청인 • 각종 무효심판 청구인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무효심판 피청구인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피청구인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 • 거절결정 불복 심판 청구인 • 정정심판 청구인 •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상기 심판의 심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심판의 심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주요개념요약	
재외자	국적에 관계 없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 특허관리인 뿐 (5:206)
재내자	국적에 관계 없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
내국인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자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재외자+외국인+비동맹국 거절이유(25)
절차를 밟는다	절차에 요구되는 서면(서류)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행위

3. 대리인

주요내용요약		
법정대리인	친권자	제한 없이 절차 대리 가능
	후견인	특허취소신청이나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재심에 한해 후견 감독인의 동의 없이도 절차 대리 가능
임의대리인	출, 존, 특, 신, 청, 우, 불, 복(제6조) 절차의 경우 특별수권 필요	위반시 보정명령 (추인 가능)
	임의대리권을 위임한 본인/법정대리인 절차진행불가(제8조) 사유가 있어도 임의대리권 소멸되지 않음	제20조 관련
	포괄위임 가능	
	대리권 서면증명	위반시 보정명령 (추인 가능)
	개별대리	
	대리인 선임/개임 명령	명령 전 절차 무효 가능

4. 복수당사자 대표

주요내용요약		
각자대표	출, 존, 신, 청, 우, 불(제11조 제1항 각호) 이외 절차 각자 진행 가능	제11조 제1항 각호는 함께 가능
대표자선임	대표자만 절차 진행 가능	제11조 제1항 각호는 특별수권 필요
	대표권 서면증명	
대표자지정 (제197조 제2항)	국제출원의 경우 내국인·재내자 중 첫 번째로 기재되어 있는 출원인 대표자지정 가능(시규 제106조의4)	

5. 방식

주요내용요약		
서류반려	특허고객번호 또는 주소지 누락(제3호)	반려이유통지 → 소명기간(지정기간) 내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 제출 가능(반려이유에 대해 보정 불가능) → 반려요청한 경우, 소명이 미흡하거나 소명에 불응한 경우 서류반려처분 → 행정심판 or 행정법원에 불복 가능
	외국어 명세서 제외하고 외국어로 기재(제4호)	
	명세서 또는 발명의 설명 누락(제5호)	
	청구범위 제출 유예(제5호의2, 제5호의3, 제15호, 제16호)	
	분리출원(제5호의4, 제5호의5)	
	특허관린인 미선임(제6호)	
	기간경과(제7호)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제11호)	
	재심사청구(제19호)	
	국어번역문(제20호)	
	중복서류제출(제21호)	
서류반환	수리되기 전 서류에 대해 반환신청하는 절차(시행규칙 제11조의2)	
절차무효	제3조 제1항 위반	보정명령(보정사유통지) → 지정기간 내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 가능 → 보정에 불응하거나 의견내용이 이유 없는 경우 절차무효 가능 → 절차무효처분한 경우 행정심판 or 행정법원에 불복 가능
	제6조 위반	
	방식 위반	
	수수료 미납	
<p>절차를 밟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 제출 → 반려여부심사 → 반려하지 않고 수리한 경우 절차무효여부 심사 → 무효되지 않아 방식이 적법하게 구비된 절차의 경우 그 절차로써 요구하는 바를 받아 줄지의 여부를 심사(이를 실제심사라 함)²⁸⁶⁾ 또는 심사없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 행정처분²⁸⁷⁾</p>		

286) 예컨대 출원절차라면 그 절차로써 요구하는 바가 특허의 부여이므로 특허를 부여할 만한 출원인지, 즉 거절이유가 없는지를 심사.

287) 예컨대 심사청구절차라면 실제심사할 요건이 없으므로 방식이 구비된 경우 그 절차로써 요구하는 바인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 존재 여부의 심사개시.

6. 기간

주요내용 요약			
기간계산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제34조 확정일, 제35조 확정일, 제180조 제3항 확정일) 외에는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음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		
기간변경	법정기간	연장	청구 또는 직권으로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가능
		단축	불가
	지정기간	연장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능
		단축	청구에 따라 가능
추후보완	보정명령 지정기간		사유 소멸일부부터 2개월 + 만료일부부터 1년
	제132조의17 의 심판청구기간		
	제180조 제1항의 재심청구기간		
	심사청구기간		
	재심사청구기간		
	특허료 추가납부기간/보전기간		
절차중단	중단사유		수계자
	당사자 사망		상속인 등(단 상속포기기간에는 수계 불가)
	당사자 합병 에 따라 소멸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당사자 절차능력 상실		절차능력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사망 또는 대리권 상실		
	당사자 수탁임무 종료		새로운 수탁자
	대표자 사망 또는 자격 상실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파산관재인 등 사망 또는 자격 상실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수계자가 수계해야 중단된 절차속행 → but 수계자가 수계신청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수계명령 요청 또는 특허청장 등이 수계명령 → 수계명령에 따른 지정기간 내 수계가 없는 경우 → 지정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수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 후 절차 속행

절차중지	특허청 등의 직무 수행 불가시 당연 중지 → 사유 소멸 후 절차속행(제23조)
	당사자에게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 특허청장 등의 재량에 따라 결정으로 중지명령함으로써 절차 중지 → 중지결정취소 후 절차속행(제23조)
	심사/소송에 필요한 경우 재량에 따라 심사/소송 절차 중지 → 중지결정취소 후 절차속행(제78조)
	심판/소송에 필요한 경우 재량에 따라 심판/소송 절차 중지 → 중지결정취소 후 절차속행(제164조)
	제척/기피신청시 긴급한 경우 제외하고 절차중지 → 제척/기피에 대한 결정 후 절차속행(제153조)
중단/중지 후 절차속행시	기간의 진행이 있었다면 모든 기간 처음부터 다시 진행

주요기간요약	
절차의 추후보완기간(제16조 제2항, 제17조, 제67조의3, 제81조의3 제1항)	사유 소멸한 날부터 2개월 + 원래 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기간(제34조, 제35조)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으로 거절결정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으로 특허무효심결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공지예외적용주장 기간(제30조)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절차의 경우 출원일부부터 30일 이내 증명서류 제출
특허청구범위 ·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제42조의2, 제42조의3)	우선일부터 1년 2개월 이내 + 제3자 심사청구 취지를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기간(제47조)	거절이유통지 받기 전 - 특허결정서 송달하기 전까지 거절이유통지를 1번이라도 받은 이후 -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 재심사 청구할 때
분할출원기간(제52조)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기간 / 거절결정서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특허결정서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설정등록일 전까지
분리출원기간(제52조의2)	거불심 기각심결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출원기간(제53조)	최초 거절결정서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우선권주장 관련 기간(제54조, 제55조, 제56조)	최초 출원일부터 1년 이내 / 우선일부 1년 4개월 이내 증명서류 제출 / 우선일부 1년 4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 보정 또는 추가 가능 최초 출원일부 1년 이내 / 선출원일부 1년 4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 보정 또는 추가 가능 출원일부 1년 3개월
심사청구기간(제59조)	출원일부 3년 이내
출원공개시기(제64조)	우선일부 1년 6개월 지난 후
재심사청구기간(제67조의2)	특허결정서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설정등록일 전까지, 거절결정서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특허료 납부기간(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5항,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제3항)	특허결정서/특허결정심결문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원 납부기간만료일부 6개월 이내 보전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 3개월 이내
특허료 · 수수료 반환청구기간(제84조)	통지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기간(제90조 제2항, 제92조의3 제2항)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이전 설정등록일부 3개월 이내
특허취소신청기간(제132조의2)	설정등록일부 등록공고일 후 6개월 이내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제132조의17)	거절결정서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국제특허출원의 각종 번역문제출기간(제201조 제1항, 제204조, 제205조)	제203조서면(국내서면제출기간) 발명의 설명 · 청구범위 · 도면 · 요약서 (국내서면제출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 PCT19조 · 34조(기준일)
국제특허출원의 공지예외적용주장 기간 특례(제200조, 시행규칙 제111조)	기준일부 30일 이내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 특례(제206조, 시행규칙 제116조)	기준일부 2개월 이내
공시송달 효력발생시기(제219조)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 후 /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

참고로 출원일부 기간을 기산하는 대표적인 예로써 공지예외적용 증명서류 제출(제30조 제2